

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(이연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7925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2. 6.

발의자 : 이연희 · 박정 · 복기왕

윤종군 · 한민수 · 박상혁

허종식 · 한준호 · 임미애

정준호 · 김남희 · 문진석

이춘석 · 김윤덕 · 이정문

서미화 · 손명수 의원

(17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지자체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면 오히려 교통 혼잡이
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
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음.

그러나, 1996년 노외주차장 설치제한지역의 제도 도입 이후 약 30년
간 노외주차장 설치제한지역의 지정 실적이 없는 상황임.

또한, 「주차장법」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이나 「도시교
통정비 촉진법」에 따른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등 유사한 제도를 활
용하여 교통 혼잡을 완화할 수 있음.

이에 불필요한 제도개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노외주
차장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노외주차장 설치 제한 규정을 폐지하려는

것임(안 제12조제6항 삭제).

법률 제 호

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6항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2조(노외주차장의 설치 등) ①</p> <p>~ ⑤ (생략)</p> <p><u>⑥ 특별시장 · 광역시장 · 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.</u>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 제한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</p>	<p>제12조(노외주차장의 설치 등) ①</p> <p>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<삭 제></u></p>